

#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

## 심사결과보고서

1992. 3. 7.  
내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년 2월 26일

· 회부일자 : 1992년 2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76회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(1992. 3. 5.)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국장 김용덕)

가. 제안이유

지방세법 개정 (법률 4415호 1991. 12. 14)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

도세로 지정됨에 따라

충청북도세조례 제 28 조 (부과지역의 고시)에 의거 부과지역을

고시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부과지역

- 시지역 : 136동 중 120동

- 군지역 : 1,383리동 중 430 리동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 전문위원 정천현 )

지방세법의 개정 (법률제 4415호 1991.12.14) 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 
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.군세로 시장,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던  
소방공동 시설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 
되어 있는바,

충청북도세조례 제 28 조에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한것으로써  
소방서및의용소방대가 설치된지역 및 소방차가 20분이내에 출동하여  
진화가 가능한 지역인 시지역 136동중 120동, 군지역 1,383리동중  
430리동을 부과지역으로 선정 고시하는것으로써 본 고시안은  
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없음

6. 심사결과 : 도원안대로 의결 ( 참석 9 인, 찬성 9 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